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양승춘* · 최민호** · 김성일* · 정기산*

* 농촌진흥청

** 한국농업전문학교

Pres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Upbringing Full-time Young Farmers

Seung Choon Yang*, Min Ho Choi**, Sung Il Kim* and Ki San Cheong*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llege

Summ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present status of services for upbringing young farmers, and to suggest development directions for upbringing full-time young farmers in Korea. The present status of services for upbringing full-time young farmers was not sufficient, and needed to be improved.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suggested by the researchers were : 1) to build integrated upbringing service policy ; 2) to systematize upbringing services ; 3) to share the roles of institutions that concerned with the service ; and 4) to reinforce and coordinate activities of various organizations for upbringing full-time young farmers.

I. 서 언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특히 농촌청년층의 도시이동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농촌의 주요문제인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및 농촌 후계세대의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1980년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 제정하고 1981년 농민 1,795명, 어민 150명을 선발하여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을 용자 지원하면서 부터 시작된 이후 1996년까지 농업인후계자 88,643명, 전업농 30,777명, 선도개척농 85명, 선도농업경영체

189명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인후계자 자금지원 이전단계인 예비후계자와 3년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전국 농촌 마을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 후계세대의 확보와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크게 공헌하였으나 정부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자 모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금 전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후의 전문기술교육, 최신정보 제공 및 농장의 효율적인 관리, 사후관리체계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적정하게 지원체계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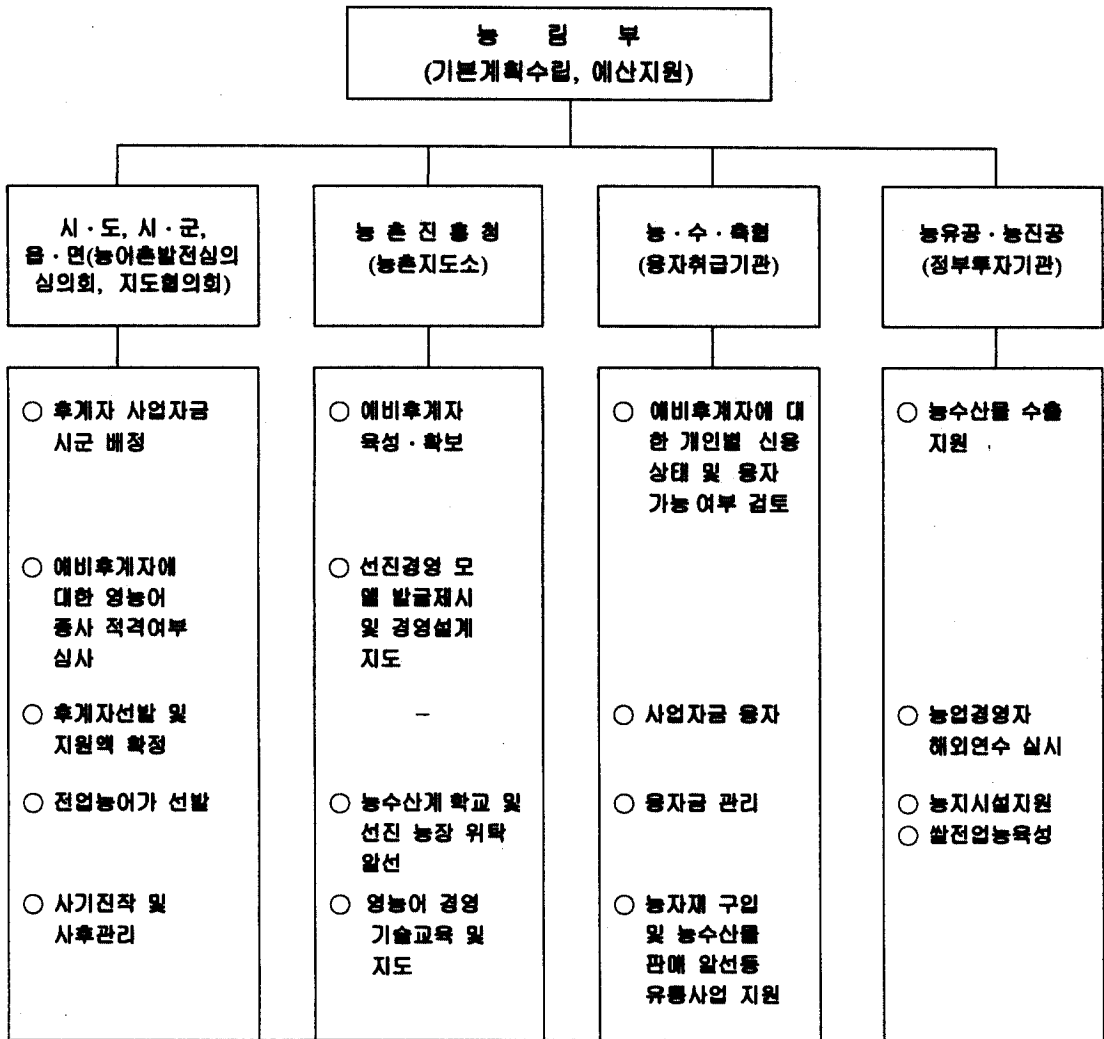
여기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발전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에 관한 기초 통계자료와 기존의 문헌에 관한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수행되었다.

II.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의 현황

1.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추진체계

농업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은 농업인후계자 선발, 사기진작 부실후계자 정리등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지도기관은 농업인후계자 추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지도, 농협은 자금용자 지원 및 관리, 유통판매 활동지원과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시설 지원 및 농수산물 수출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진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농업전문인력 육성 체계도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이와 같이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관련되어 있어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이 곤란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관간의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업별 육성현황

1) 예비후계자 육성

예비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업인후계자 자금을 지원하기전 일정한 훈련을 거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 현재 30세 이하이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 해당되는 자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자가 해당 시·군 농촌지도소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1996년 12.31일 현재 17,753명이 전국 농촌지도소에 등록되어 있다.

농촌지도소장은 등록된 예비후계자에게 영농정착을 위해 전담지도사를 지정하고 선진농장에서 영농기술을 습득토록 지도하고, 자질, 부모의 농장 등을 고려한 작목선택 등의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지원되는 정부자금은 없으며 농업인후계자 육성 사업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예비후계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비후계자의 육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농업인후계자 육성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 사업기반 조

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198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1) 신청자격

농업인후계자 지원대상 자격은 산업기 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중 편입된 날로부터 복무기간이 2년이상 경과된 자와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자로서 40세 미만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또는 생산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 중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40세 미만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중 전역희망자로서 40세미만인자 등이다.

2) 지원조건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은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 ~ 5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10년)을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3) 지원시설의 종류

분야별 지원대상사업은< 표1>과 같이 경종농업분야와 축산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로 농지구입이나 해당작목의 시설물 설치 및 농기계구입 등에 제한하여 사업자금을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4) 선정절차

농업인후계자의 선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읍·면장이 읍·면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농촌지도소장이 지정하는 읍·면담당 농촌지도소 공무원, 농·축협등 관련 용자취급기관 임직원 및 선도농가 3인등 총 6인 내외로 구성하여 영농경력, 영농기반 등을 평가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하고 농촌지도

소장은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및 지원금액을 정하여 적격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한다. 한편,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장과 협의하여 지역내 농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 대상자의 심사·추천이 가능한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존재하고 이들 단체에 심사·추천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지원

대상자 심의·추천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은 지원대상자를 심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하고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한다.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장과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대상자의 선발이 완료된다.

<표 1> 농업인후계자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분 야 별	사 업 작 목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역
경종농업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 시설, 수경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판수시설, 대형농기계, 컴퓨터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축 산 분 야	한(육)우, 낙농, 양돈, 기타 축산등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 사료 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5)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농업인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영농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공통교육과 분야별 영농 기술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영농 기술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은 농촌지도소장이 현지 여건, 농업인후계자 희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

농업인후계자가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의 사후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상의 추진정도와 경영실태 조사등은 농촌지도소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시·군 농촌지도소의 제한된 인력으로 매년 선발되는 농업인후계자와 기존의 후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사업계획의 추진정도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6) 육성인원

농업인후계자는 1981년 이후 1996년까지 총 88,643명을 선정 육성하고 있다. 연도별, 사업별 육성인원은 <표 2>에서와 같이 축산분야가 35,615명으로 40.1%, 일반농사 34,896명 39.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후계자가 축산과 일반농사분야를 중심으로 육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4. 전업농 육성

전업농 육성사업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규격화·현대화된 가족경영체를 확보하고 타산업부문 종사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며,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쌀 전업

농과 기타 전업농으로 구분하여 육성하고 있다.

<표 2> 농업인후계자 육성인원

연 도	계	일반농사	원 예	과 수	특 작	축 산
'81	1,795	73	213	29	34	1,446
'82	1,846	473	347	67	92	867
'83	1,807	687	215	17	50	838
'84	4,480	2,262	257	20	101	1,840
'85	9,021	4,850	561	73	223	3,314
'86	9,063	6,288	653	90	286	1,746
'87	7,684	5,867	403	219	186	1,009
'88	3,600	2,795	176	236	57	336
'89	1,850	1,255	85	151	32	327
'90	1,850	1,257	139	99	54	301
'91	1,350	527	179	88	113	443
'92	9,000	2,471	1,430	525	409	4,165
'93	9,000	2,269	1,438	464	342	4,487
'94	8,340	1,286	1,605	499	417	4,533
'95	9,730	1,313	1,921	657	484	5,355
'96	8,227	1,223	1,466	545	385	4,608
계	88,643 (100.0)	34,896 (39.4)	11,088 (12.5)	3,779 (4.3)	3,265 (3.7)	35,615 (40.1)

1) 신청자격

전업농 신청자격 요건은 공통적으로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그 품목을 계속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주가 55세 이하인 농가(경영주의 연령이 그 이상인 경우는 후계농업인이 신청)로서 가족노동력으로 일상적인 농작업을 수행하며, 전업농 규모에 필요한 기계 및 시설의 조작성과 기초적인 정비능력이 있는 농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신청품목 경영규모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최소규모~전업농규모사이에 있는 농가인 자이다.

2)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전업농의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은 쌀 전업농은 23.5백만원(국고보조 25%, 지방비보조 25%, 국고융자 16%, 농협융자 24%, 자부담 10%)이며 연리 5%, 1년 거치 5~7년 상환이며 농지구묘화 전업농은 34.1백만원(영농규모적정화 자금융자) 농지구입자금 연리 3%·20년 균분상환, 임차료 선급금 무이자 3~10년 균분상환)이다.

한편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등 기타 품목 전업농은 50~100백만원을 지원하며 연리 5%, 5년거치 5년균분 상환조건으로서 품목

과 농가수준에 맞게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3) 지원시설의 종류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은 <표 3>와 같이

쌀과 기타 전업농 육성사업이 구분되고 있는데 지원자금이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고 종자·비료·농약 구입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표 3>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

분 야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용
쌀	농지구입, 임차, 농기계구입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농지구입,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수경재배시설, 파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시설, 생약조제시설, 저장시설, 관수시설, 대형농기계, 컴퓨터, 기타농업기반시설

4) 선정절차

쌀 전업농은 농어촌진흥공사 시·군 지부에서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 선정하며 기타 전업농은 시·군 농촌지도소장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여부 등을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시장·군수에게 추천하고 시장·군수는 시·군 농어촌발전심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5) 육성인원

전업농은 1992년 이후 1996년까지 30,777 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수도등 일반 농사가 8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전업농 육성인원

구 분	계	(단위 : 명)				
		일반농사	원 예	과 수	특 작	축 산
계	30,777 (100.0%)	25,175 (81.8%)	2,398 (7.8%)	995 (3.2%)	751 (2.4%)	1,458 (4.8%)
'92	1,000	222	182	108	63	25
'93	1,000	177	171	98	65	489
'94	1,040	137	190	108	61	544
'95	13,132	11,594	927	332	279	-
'96	14,605	13,045	928	349	283	-

5. 선도농업경영체 육성

선도농업경영체는 경영규모, 생산기술, 경

영기법, 시설·장비, 소득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한 농업경영체를 “선도농업경영체”로 지정, 일반농가·법인경영체의 발전

모델로 활용하고 일반농가와 농과계 학생에 대해 현장감 있는 기술·경영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1) 신청자격

(1) 가족경영체

가. 당해분야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고, 경영규모·소득·시설장비·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등에 있어 전업농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어 가족경영체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나. 경영주가 60세 이하로서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을 일반 농가에 전파하려는 의욕과 실질적인 교육수행능력을 갖춘 경영체

다. 농업소득이 연간 50백만원 이상

라. 농업소득중 전문품목 소득의 비중이 80%이상 등

(2) 법인경영체

가. 농어촌발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인으로서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경과한 법인체

나. 경영(순이익)규모가 사원(조합원) 수×품목별 신청자격이상인 경영체

다. 경영주가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을 학생·농민·다른 농업법인관련인에게 전

파할 의욕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도능력을 보유한 사원 또는 직원이 있는 경영체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

경영체당 지원규모는 100백만원으로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내역은 농업경영체의 발전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생산, 유통, 가공, 저장시설·장비 지원 및 교육·견학제공에 필요한 기타 시설·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

농촌지도소장이 대상자를 도 농촌진흥원장에게 추천하고 도 농촌진흥원장이 심사하여 시·도지사가 확정하며 사후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매월 1회 이상 전담지도사를 지정하여 방문 점검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4) 육성인원

선도농업경영체는 <표 5>에서와 같이 '95년 65호, '96년 70호, '97년 54호 등 총 189농가를 지정 육성하고 있다.

<표 5>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인원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경종	과수	채소	화훼	특작	축산
계	189	17	30	23	19	13	87
'95	65	7	15	10	5	4	24
'96	70	7	9	8	8	5	33
'97	54	3	6	5	6	4	30

6. 선도개척농 육성

선도개척농은 '94년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영농에 정착할 유능한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1) 신청자격

선도개척농 지원대상자의 신청자격은 농과계대학 졸업자로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거나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3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본인소유 또는 승계대상 영농기

반이 있고 동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35세 미만으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로 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100백만원이내 국고용자이며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이며 육성인원은 94년 30명을 선발한 이후 '96년까지 85명을 선정 육성하고 있다(표6참조)

2) 지원규모 및 육성인원

<표 6> 선 도 개 척 농 육 성 인 원

(단위 : 명)				
구 분	계	경 종	원 예	축 산
계	85	21	30	34
'94	30	10	10	10
'95	30	6	10	14
'96	25	5	10	10

Ⅲ.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의 발전 과제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1981년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실시한 이후 1992년 전업농 육성사업, 1994년 선도개척농 육성, 1995년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사업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의 문제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이루어지고 농촌 청년층의 이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에서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농촌사회의 활력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일정한 수의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의 현황을 바탕으로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종합계획에는 품목별로 필요한 육성인원, 육성전략, 예산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유인책과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졸업 및 교육 이수자를 후계인력으로 적극 흡수하는 방안 및 농업분야로 진입 및 진출이 용이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1. 종합적인 농업전문인력 육성의 청사진 구축

국민의 기초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품목별 전문인력의 육성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2. 단계별 인력 육성체계의 재정립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현재 예비후계자,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선도개척농, 선도농업경영체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육성목표, 자금지원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농업전문인력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기본목표 및 육성전략

등을 구체화 하지 않고 지나치게 다원화함으로써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육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예비후계자의 경우 농업인후계자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후계자의 흥미와 적성, 농장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와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영농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농업인후계자 선발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후계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비후계자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활동경력에 따라서 농업인후계자 선발시 유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업농 육성 역시 농업인후계자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영농정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업적 규모의 시설과 능력을 갖춘 자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완전한 자립전업농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등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전업농으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단계별로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선도개척농,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은 사업량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선발, 농업전문인력의 다원화에 따른 사후관리지도의 복잡성등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후계자, 후계자, 전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체계를 확립하고 선발기준의 객관적인 적용, 단계별 정예화 추진, 성장단계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의 설치 운영 및 경영발전단계에 적절한 정책자금 지원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 농업전문인력 육성 관련기관간의 역할분담 체계 확립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이 영농

정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용자, 기술교육, 농장경영능력 향상, 농업관련제도에 관한 정보 수집, 품목별 최신 유통, 가공 등에 관한 정보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관한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이고 구체화 되어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선도농업경영체 등 대부분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후 지도관리를 대부분 농촌지도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직접 농업전문인력 육성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 농촌지도소의 지도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인력별 농밀한 지도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농업전문인력에 관한 사후관리 지도 내용을 현실화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영농정착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기관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전문인력의 위상 제고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들은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고 친목활동, 경제활동 등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농업인후계자들이 진정한 농업전문인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착실하게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농·축협장,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 각계각층에 잡아 농촌사회에서 농업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농업인후계자들의 조직활동이 품목별 조직으로 확대되어 전국 품목별 농업인의 중심 조직으로 자리잡아 장기적으로는 품목별 생산, 유통, 가공 및 저장 등을 체계화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는 말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특히 장차 미래의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나갈 농업후계 세대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그동안 양적으로는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등 총 12만명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성과를 올렸고 질적으로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농업경영인 조직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유능한 농업후계세대의 양성은 농산물 수입 개방이 가속화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오늘날의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있다.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청년층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에 관한 정책이 수립되어 이들이 안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 단계를 체계화함으로써 발전단계별 지원을 내실화하고, 셋째로는 농업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간의 역할분담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인후계자 등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직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이 고도로 산업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담당할 유능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농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확립 발전시킬 수 있을 때만이 농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 참고 문헌

1. 김동일의. 1994. 한국 농촌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2. 농림부, 1996. '97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5권, 농림부.
3. 농촌진흥청. 1996. 기술지도사업 업무편람,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4. 서규선. 1990. "농어촌 청소년단체 활동과 농어민후계자 육성" 청년연구 제13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 이영대·정명채. 1990.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최민호·박덕병. 1993. "우리나라 영농후계인력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5권 제4호, 한국농업교육학회.
7. 최민호외. 1988. 축산후계자 육성 및 축산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 종합연구소.
8. 최민호. 1986. 농촌지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9. 최민호. 1987. 농촌청소년지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0. 최민호외. 1993. 농촌인력개발 육성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농업개발연구소.